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0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도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도로법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.

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호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3. 참고자료

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(7쪽)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(8쪽)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광역시장”으로,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도로”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”을 “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”을 ““도로복구공사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직접 손궤부분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직접 손궤부분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1차복구”라 함은”을 ““1차복구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2차복구”라 함은”을 ““2차복구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”을 “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인천광역시</u> 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, 「도로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의 “<u>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 이라 한다)</u>” 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인천광역시</u> ----- ----- 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도로</u>” 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공작물,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도로복구공사</u>” 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케된 도로를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</p> <p>3. “<u>직접 손케부분</u>”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</p> <p>4.(생략)</p> <p>5. “<u>1차복구</u>” 라 함은 직접 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</p> <p>6. “<u>2차복구</u>” 라 함은 직접 손케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“<u>도로</u>” 란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-----</p> <p>2. “<u>도로복구공사</u>” 란 -----</p> <p>3. “<u>직접 손케부분</u>” 이란 -----</p> <p>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1차복구</u>” 란 -----</p> <p>6. “<u>2차복구</u>” 란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원인자 부담금)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(이하 “타공사” 또는 “타행위” 라 한다)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, 직접 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, 복구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도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를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원인자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·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이 불통·파열·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⑤(생략)</p>	<p>제3조(원인자 부담금)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(이하 “원인자 부담금” 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2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----- -----<u>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)</p> <p>①(생략)</p> <p>1.~2(생략)</p> <p>3.<u>기타</u>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.</p> <p>②~③(생략)</p>	<p>제4조(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(현행과 같음)</p> <p>3.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권한의 위임)시장은 <u>제2조의 규정</u>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군수·구청장(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)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.</p>	<p>제9조(권한의 위임)시장은 <u>제2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○	○
실·국별 의견수렴결과			
협의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- '09.6.29 ~7.20 ○ 방 법 - 의견수렴		“해 당 없 음”	
입 법 예 고 결 과			
예고개요	의견제출자	의견수렴결과	반영여부
○ 기 간 - '09.6.29 ~7.20 ○ 방 법 - 시보 및 인터넷 게시		“해 당 없 음”	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계법령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법</p> <p>제2조 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도로"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. 2. "국도대체우회도로"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(市)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. 3. "국가지원지방도"란 지방도(地方道) 중 중요 도시, 공항, 항만, 산업단지, 주요 도서(島嶼),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(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·광역시도·시도·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. 4. "도로의 부속물"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도로 원표(元標), 이정표, 수선 담당 구역표,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. 도로의 방호(防護) 울타리,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. 도로에 연접(연접)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.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,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. "타공작물"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, 언제(堰堤), 호안(護岸),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, 횡단도로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. <p>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, 교량, 도선장(渡船場),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</p> <p>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, 노선명, 기점, 종점, 중요경과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76조(원인자 부담금)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</p>
	<p>관련법규 정비대상</p>
<p>관련자료</p>	<p>“해 당 없 음”</p>